



관내 업소에 통보함.

첨부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1부.

수신처: 서권 1-12, 서출 1-3  
직업안정소 (동대문, 남대문, 영등포 부네)

(제3안)

수신 문책공보실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당시 예규 제215호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을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  
되었기 통보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시예규 제315호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안 1부. 끝

## 예규 제 315호 개정 개요

### 가. 개정 사유

노동청 직안 1456-2810 (76.2.20) 호에 의함

### 나. 개정 골자

1. 본 예규 제 7조 3항 3호를 일부개정
2. 본 예규 제 7조 3항 5호 및 6호를 신설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요강개정령

~~규정~~<sup>요강</sup>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촌

# 예 주 안

서울특별시 예주제 호

비밀번호	638	9
인감	홍	희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처리요강중 개정요강

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처리 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sup>동항</sup>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다음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 5.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6. 호적 등본 또는 초본

부 칙

(시행일)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 (직업안내소의 취업 알선 )</p> <p>③ 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구직.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중 1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 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증 내용기재 (본적.주소.성명.생년 월일.번호.발행처등)</p> <p>2. 노동청장이 발행하는 기능사 수첩 사본</p>	<p>제7조 (직업안내소의 취업 알선 )</p> <p>③ 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구직.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각호중 1호 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 치하여야 한다</p> <p>1. 주민등록증 내용기재 (본적.주소.성명.생년 월일.번호.발행처등 )</p> <p>2. 노동청장이 발행하는 기능사 수첩 사본</p>	<p>노동청 직 안 1456- 2810(76 2.20)에 의거</p>

현행	개정 (안)	비고
<p>3. <u>신원증명서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u></p> <p>4. <u>영업감찰 사본</u></p> <p>5. <u>신설</u></p> <p>6. <u>신설</u></p>	<p>3. <u>신원보증서 (신원보증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u></p> <p>4. <u>영업감찰 사본</u></p> <p>5. <u>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u></p> <p>6. <u>호적등본 또는 초본</u></p> <p>4714</p>	

보 통 청

직안 1456 - 5810

63-8223

1976. 2. 20.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사회국장

제목 직업안정업무 처리요강 개정

서울특별시

1. 사회 1456 - 151(76. 2. 11)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의 직업안정 업무처리요강(예규 제315호)을 검토한바 동

요강 제7조중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소지한 구직자의 취업알선 기회 부여 사항이 누락되었으니 추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조 제3항 제3호의 신원증명서는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로 대체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12779

1976. 2. 23

정부 직업안정 국장	사회 국장	양 학	장 락	장 전
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715